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
------	----

제출연월일: 2026. 8. 14.

제 출 자: 서초구청장

제 출 부 서: 건강관리과

1. 제안이유

- 우리사회 노인인구 비중이 매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치매인구도 급증하고 있어 그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 증가, 가족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으며 치매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됨
- 따라서 어르신 치매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함
- 이에 서초구 치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무가 6년이 경과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질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초구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

나. 민간위탁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 「치매관리법」 제20조(위임과 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운영의 위탁)
- 필요성
 -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검진, 치매인식개선사업, 예방등록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나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가 아니며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지역

자원, 지속적인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전문성과 안정성 및 치매 환자 및 가족 관리와 돌봄을 위한 상시·지속성을 요구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치매예방과 인식개선(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 치매조기검진(선별검진, 정밀검진, 원인확진검사)
- 치매등록관리(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등)
- 치매가족지원사업(상담, 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
-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정망협의체, 자원봉사 운영 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치매관리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초구치매안심센터
- 소재지 : 서초구 방배중앙로118 서초시니어플라자 3층(방배)
서초구 염곡말길 9 내곡느티나무쉼터 4층(내곡)
- 수탁기관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개관일 : 2008.09.01.(방배 : 2025.12.01.)
- 규모 : 456㎡(방배), 801.12㎡(내곡)
- 시설현황 : 검진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가족카페, 안심하우스 등
- 이용현황 : 월 2,000명(연간 24,000명)

마. 민간위탁기간

- 위탁기간 : 2024.01.01 ~ 2026.12.31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원칙,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서울특별시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수탁기관 선정)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수탁기관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소요예산	1,774,974	1,908,612	2,221,980

○ 산출근거

- 인건비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 기준 준용
- 운영비 : 프로그램사업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아.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2026년 제4차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등 심의한 결과, 적정 의결로 심의 가결되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 치매관리법 제20조(위임과 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나. 현 위탁 현황

연 번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계약기간	비 고
1	최초위탁	2008.09.01~2009.12.31	서울성모병원	1년 4개월	공개모집
2	재계약	2010.01.01~2012.12.31	서울성모병원	3년	
3	위탁	2013.01.01~2013.12.31	서울성모병원	1년	공개모집
4	재계약	2014.01.01~2016.12.31	서울성모병원	3년	
5	위탁	2017.01.01~2018.12.31	서울성모병원	2년	공개모집
6	재계약	2019.01.01 ~ 2021.12.31	서울성모병원	3년	
7	재위탁	2022.01.01~2023.12.31	서울성모병원	2년	공개모집
8	재계약	2024.01.01 ~ 2026.12.31	서울성모병원	3년	

다. 향후계획

- 2026. 9.~10.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접수
- 2026. 10.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6. 12. : 위·수탁 협약 체결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시설현황 및 위치도

□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수탁기관	개관일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방배	방배중앙로 118 서초시니어플라자 3층	456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025.12.1.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내곡	염곡말길 9 내곡노티나무쉼터 4층	801.12		2008.9.1. ¹⁾

1)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개소, 2016.12.16. 내곡 이전

○ 시설현황 : 검진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가족카페 등
- 방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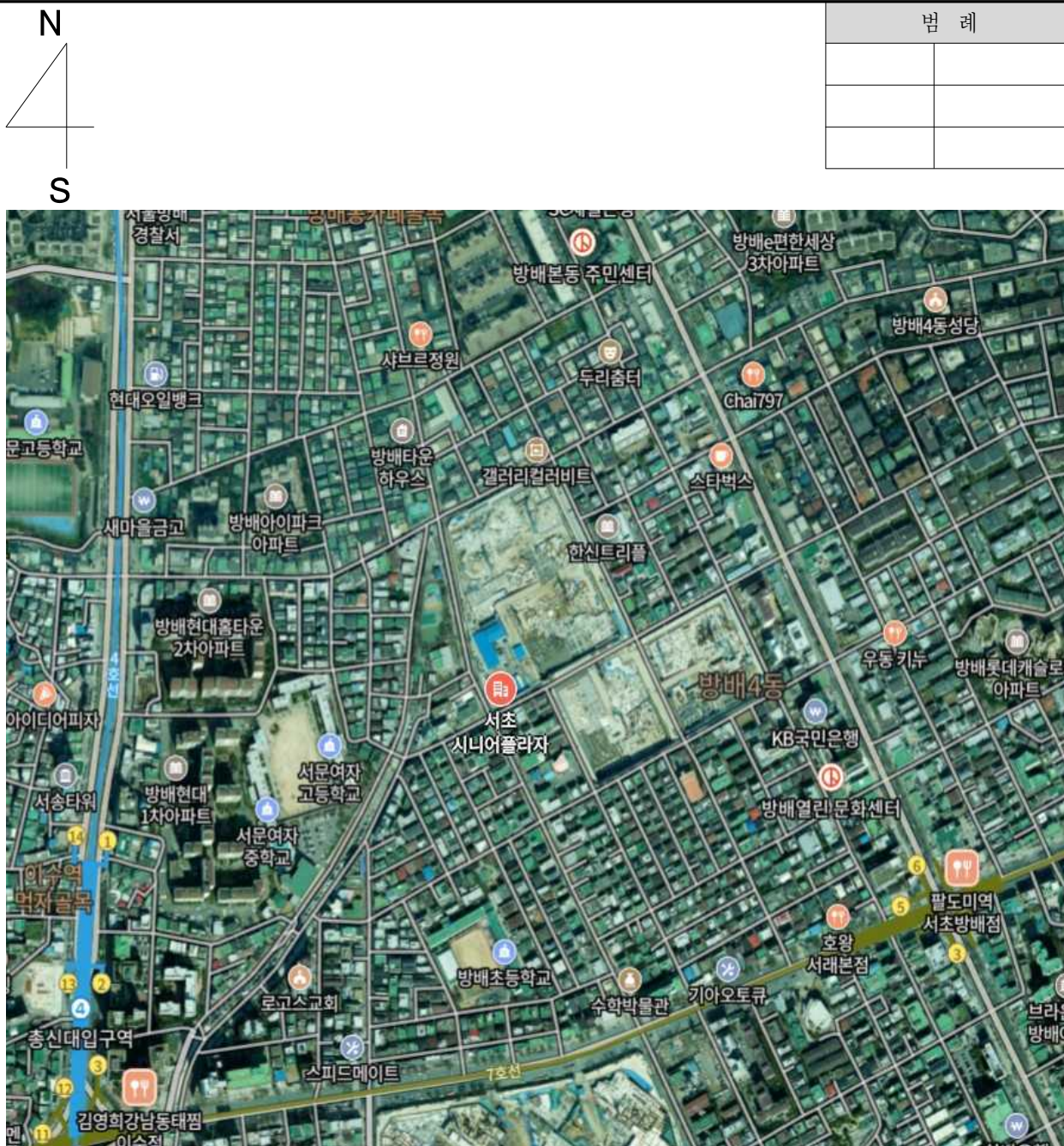
방배센터

- 내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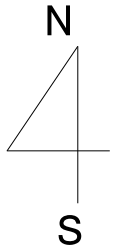
내곡센터



(S=1:10,000)



1. 서초구 서부에 위치하고 있음.
2. 주변 지하철역으로는 이수역(도보 10분), 내방역(도보 10분) 도보 2분 거리의 버스 정류장이 있음.



범례



지역여건
(내곡)

1. 서초구 남단에 위치하고 있음.
2. 주변 지하철역으로는 양재시민의숲역(도보 30분),
도보 5분 거리의 버스 정류장이 있음.

[서초구치매센터 방배]



외부전경



가족카페



프로그램실



AI프로그램실

[서초구치매센터 내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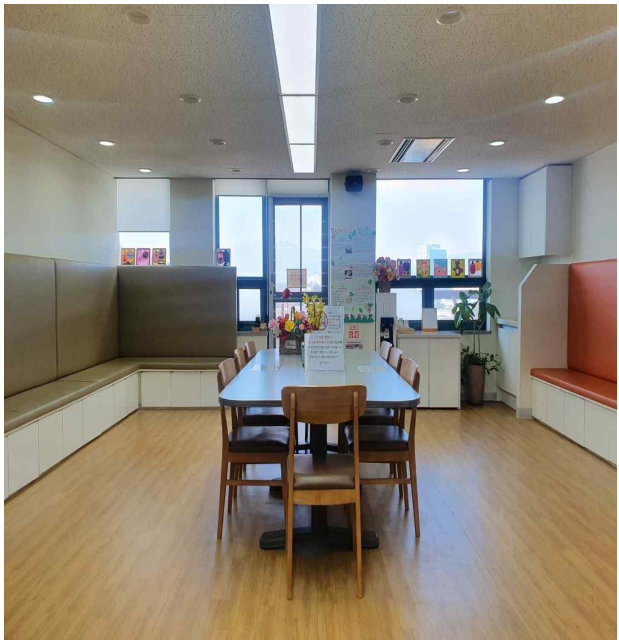
외부전경



검진실 로비



치매안심하우스



인지카페

참고1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안 건 명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운영〔재위탁〕		
부서명 (주관부서)	건강관리과	부서장	건강관리과장 김혜정(8008)
		팀 장	마음건강팀장 박은미(8080)
		담당자	마음건강팀 김경은(8081)
시설개요	소 재 지	〔방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18, 서초시니어플라자 3층 〔내곡〕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말길9, 내곡느티나무쉼터 4층	
	시설규모	〔방배〕 456㎡ 〔내곡〕 801.12㎡	
	시설용도	공공업무시설	
민간위탁 예정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치매 예방, 조기진단 및 관리,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초구 치매환자와 가족,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치매 중증화 억제를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 ○ 위탁사무 내용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업무(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 치매 조기검진에 관한 업무(선별검진, 정밀검진 등) - 치매예방 등록·관리에 관한 업무(상담, 사례관리 등)		
심의결과	■ 적정		
	○ 심의일자 : 2026. 7. 31.(금) ○ 심의위원 : 총 10명 중 8명 참석 - 적정 의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2026년 8월 4일			
서초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대우/02-2155-6396)			
건강관리과장 귀하			

참고2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②이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 ①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 ①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같음한다. 다만,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반복적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